제주대림 위듀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15865호 (2018. 02. 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제주대림 위듀파크 아파트 42세대**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는 2018.02.0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2.27.(화)입니다.**
(청약 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됨)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27)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는 청약 가능합니다.
※ 동일순위에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 (2017.02.27..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 합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청약자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전매 금지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의한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함)
-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의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호수 배정 업무는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 함)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1항 1에 의거하여 주차장을 32(장애인2대포함)대 설치 하였으며, 세대당 1대주차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은 2018. 02. 22일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내역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84-1번지**
■ **대지면적 : 2,137.60㎡**
■ **공급규모 : 지상7층 1개동 아파트 총 42세대 연면적 3,473.0296㎡**
[특별공급 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Type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	동구분	공 급 세 대 수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최하층우선배정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공용면적 (기타,주차장 등)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면적	주거공용	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2018000153-01	59.5956A	59A1	59.5956	19.0562	78.6518	3.1380	81.7898	50.5573	1동	6	1			5	1	2018.04
			59A2							1동	5	1			4	1	
			59A3							1동	5	1			4	1	
	2018000153-02	62.0006B	62B	62.0006	20.1149	82.1155	3.2645	85.3800	52.5974	1동	7				7	1	
	2018000153-03	59.0786C	59C	59.0786	19.3848	78.4634	3.1107	81.5741	50.1186	1동	7	1			6	1	
	2018000153-04	59.8956D	59D	59.8956	20.2319	80.1275	3.1538	83.2813	50.8116	1동	7				7	1	
	2018000153-05	59.8796E	59E1	59.8796	19.5166	79.3946	3.1528	82.5490	50.7980	1동	4				4	1	
			59E3								1				1		

공급금액

(단위 : ㎡, 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Type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 약 금(20%)	잔 금(8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59.5956A	59A1	2층	1	37,350,000	211,650,000	249,000,000	49,800,000	199,200,000
		3층	1	37,350,000	216,650,000	254,000,000	50,800,000	203,200,000
		4층	1	37,350,000	219,650,000	257,000,000	51,400,000	205,600,000
		5층	1	37,350,000	227,650,000	265,000,000	53,000,000	212,000,000
		6층	1	37,350,000	228,650,000	266,000,000	53,200,000	212,800,000
		7층	1	37,350,000	250,650,000	288,000,000	57,600,000	230,400,000
	59A2	3층	1	37,350,000	216,650,000	254,000,000	50,800,000	203,200,000
		4층	1	37,350,000	219,650,000	257,000,000	51,400,000	205,600,000
		5층	1	37,350,000	227,650,000	265,000,000	53,000,000	212,000,000
		6층	1	37,350,000	228,650,000	266,000,000	53,200,000	212,800,000
		7층	1	37,350,000	250,650,000	288,000,000	57,600,000	230,400,000
	59A3	3층	1	37,350,000	216,650,000	254,000,000	50,800,000	203,200,000
		4층	1	37,350,000	219,650,000	257,000,000	51,400,000	205,600,000
		5층	1	37,350,000	227,650,000	265,000,000	53,000,000	212,000,000
		6층	1	37,350,000	228,650,000	266,000,000	53,200,000	212,800,000
		7층	1	37,350,000	250,650,000	288,000,000	57,600,000	230,400,000
62.0006B	62B	1층	1	38,980,000	201,020,000	240,000,000	48,000,000	192,000,000
		2층	1	38,980,000	211,020,000	250,000,000	50,000,000	200,000,000
		3층	1	38,980,000	216,020,000	255,000,000	51,000,000	204,000,000
		4층	1	38,980,000	218,020,000	257,000,000	51,400,000	205,600,000
		5층	1	38,980,000	224,020,000	263,000,000	52,600,000	210,400,000
		6층	1	38,980,000	227,020,000	266,000,000	53,200,000	212,800,000
		7층	1	38,980,000	231,020,000	270,000,000	54,000,000	216,000,000
59.0786C	59C	1층	1	37,110,000	198,890,000	236,000,000	47,200,000	188,800,000
		2층	1	37,110,000	209,890,000	247,000,000	49,400,000	197,600,000
		3층	1	37,110,000	214,890,000	252,000,000	50,400,000	201,600,000
		4층	1	37,110,000	216,890,000	254,000,000	50,800,000	203,200,000
		5층	1	37,110,000	222,890,000	260,000,000	52,000,000	208,000,000
		6층	1	37,110,000	223,890,000	261,000,000	52,200,000	208,800,000
		7층	1	37,110,000	239,890,000	277,000,000	55,400,000	221,600,000
59.8956D	59D	1층	1	38,030,000	197,970,000	236,000,000	47,200,000	188,800,000
		2층	1	38,030,000	208,970,000	247,000,000	49,400,000,	197,600,000
		3층	1	38,030,000	213,970,000	252,000,000	50,400,000	201,600,000
		4층	1	38,030,000	214,970,000	253,000,000	50,600,000	202,400,000
		5층	1	38,030,000	220,970,000	259,000,000	51,800,000	207,200,000
		6층	1	38,030,000	222,970,000	261,000,000	52,200,000	208,800,000
		7층	1	38,030,000	227,970,000	266,000,000	53,200,000	212,800,000
59.8796E	59E1	2층	1	37,690,000	215,310,000	253,000,000	50,600,000	202,400,000
		3층	1	37,690,000	222,310,000	260,000,000	52,000,000	208,000,000
		4층	1	37,690,000	225,310,000	263,000,000	52,600,000	210,400,000
		5층	1	37,690,000	233,310,000	271,000,000	54,200,000	216,800,000
	59E3	6층	1	37,690,000	235,310,000	273,000,000	54,600,000	218,400,000

■ **공통 유의사항**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0.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전원 무상으로 제공함.
- 당 사업지의 LPG 가스저장시설로 인한 충전차량 진출입 등으로 단지 내 교통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 이내를 특별공급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 **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시・장소**

구 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18.03.05.(월) (09:00~15:00)	당사 분양사무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8.03.05.(월) (16:00)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 제8호, 제12호에서 제15호, 제17호, 제28호 및 제36조 제1호에서 제8호는 제외한다.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 총액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별표2에 다른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외)

■ **계약체결일 : 2018. 03. 26(월)~ 2018. 03. 28(수)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17세대 / 주택건설 공급량의 10%이내)

■ 공급세대

(단위 : 세대)

주택형(전용면적기준)	59.5956A			59.0786C	계
Type	59A1	59A2	59A3	59C	
다자녀 특별공급	1	1	1	1	4

■ 공급대상자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	-	-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 기 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 의 사 항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2.2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 일반공급 청약 1,2순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2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함
3.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5.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6.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7.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8.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9. 고령자,장애인,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제주시 및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제주시 및 제주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제주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1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선납도 인정함.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2.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3.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102㎡이하	전용면적 135㎡이하	모든 면적	비 고
예치금액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그밖의 광역시

4.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2018.03.06.(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일시 : 2018. 03. 13(화)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및 홈페이지(hppt//www.위듀파크.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의 착오 및 내용 전달에 대한 불확실성 소지가 있어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8.03.07(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평일: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함]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는 가점제로 청약접수 하되 ,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

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0점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수도권은 1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장기간 보유 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배우자 포함)

②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 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2순위 접수대상 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 공개기간(60일) 경과 다음날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 예비당첨자 지위 소멸 후 예비입주자 관련 개인정보 파기.

Ⅳ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대 상 자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장소
특별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 동호수배정)	2018. 03. 13(화)	2018. 03. 26(월) ~ 2018. 03. 28(수), 10:00 ~ 16:00 (장소: 당사 분양사무실)

당첨자 발표 및 확인방법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주)위듀디앤씨(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주)위듀디앤씨 홈페이지(www.위듀파크.com)에 접속 ->당첨확인
	이용기간	2018. 03. 13(화) ~ 2018. 03. 22 (목)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이용기간	2018. 03. 13(화) ~ 2018. 03. 22 (목)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문자 수신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 03. 13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당첨자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선정 및 특별공급을 포함한 동 ·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상기 매체 및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개별 서면 통지 및 전화문의 응답은 하지 않음.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 **2018. 03. 26(월) ~ 2018. 03. 28(수)**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제주은행	**14_01_070215**	(주)위듀디앤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공동주택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가점제)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자 융자지원

1. 당사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분양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구할 수 없음.
2.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함.
3.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대

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제(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이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금 2회차 및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4. 대출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5. 주택신용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6. 당사는 융자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7. 융자알선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융자를 알선 하지 않음.
8. 정부정책·금융기관·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9.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제한)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10.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예정일 : 2018년 4월경** (준공일 : 2018년 02월21일)

1.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음)
2.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사전방문**

입주지정 개시일전 사전방문 가능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계약금 납부(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 **발코니 확장**

-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신청할 수 없음(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 등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외부 실외기공간(난간 포함) 또는 실내 실외기실 설치에 따른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시 무상제공됨에 따라 별도의 납부 금액은 없음.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주택형(㎡)	설치위치	공급금액	납부시기		업체명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 시)	
59.5956A	거실, 안방	8,000,000	1,600,000	6,400,000	모델명,계약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계약시 확인 필요)
62.0006B	거실, 안방	8,000,000	1,600,000	6,400,000	
59.0786C	거실, 안방	8,000,000	1,600,000	6,400,000	
59.8956D	거실, 안방	8,000,000	1,600,000	6,400,000	
59.8796E	거실, 안방	8,000,000	1,600,000	6,400,000	

- 시스템에어컨 설치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계약주체는 본 사업인 (주)위듀디앤씨이며, 공급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 시스템에어컨의 공급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실외기 용량, 내부 배관 등 시공상의 문제로 본 설치 계약 이후 분양자가 개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건물 외부에 실외기를 추가로 달아매는 것은 안전 및 미관상의 이유로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은 확장 시에만 옵션선택이 가능하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매립냉매배관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본 시스템에어컨 설치계약도 동시에 승계되어야 함.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제주은행	**14_01_070215**	(주)위듀디앤씨	입금자명에 동,호수 기재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에어컨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 에어컨공사 계약서 상 명시 예정

V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2)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2)× 0.3025 또는 형별면적(m2)÷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의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부지 공동주택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절수 설비	적용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내진 및 내풍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라 설계 되었으며, 이는 리히터규모 약 6.0~6.5에 해당됨

■ 아파트 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7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동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적용됨
- 하자 판정의 기준은 사용검사(승인) 도서를 기준함
- 콘트리트에 발생되는 0.2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자연 현상으로 하자 범위에서 제외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 통신감리
회사명	(주)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에이스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39,023,200	₩13,2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주)위듀디앤씨	(주)석연종합건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33,2층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7,403
법인등록번호	110111_4290906	120111_029906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분양문의 064-722-2399